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

의안 번호	387
----------	-----

제출년월일 : 2001. 1. .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요구이유

-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 결정에 따라
-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의 모집 공고전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위탁대상시설.

- 시 설 명 :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 시설용량 : 63,000톤/일(폐수 40,000, 오수 23,000)
- 부지면적 : 78,748m²(23,821평)
- 처리방식
 - 수 처 리 : 중력침전, 생물학적영양염류제거, 3차고도처리
 - 슬러지처리 : 원심탈수, 매립 또는 소각
- 기타 부대시설
차집(폐수)관거, 중계펌프장, 방류관로, 기타 관리동의 9종
단. 별도 인계인수서에 의함

나. 위탁대상업무의 내용

-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업무
- 냉·난방시설의 관리업무
- 시설내·외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 관리업무
- 폐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및 시험

- 처리시설 내·외의 환경정비
 - 약품, 실험실 운영에 필요한 초자기구류·시약류등 관리
 -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보관관리
 -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 수질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 폐수종말처리시설에 관한 일반사무처리
 - 폐수배출업체의 폐수처리시설유입처리승인, 배수설비설치승인, 배수설비설치검사, 배수설비사용개시등에 관한 업무
 -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징수, 관리등에 관한 업무
 - 기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 단, 위·수탁업무 내용 및 처리는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위탁업무처리지침』에 의함

다. 수탁사무의 처리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명의로 시행하되, 위탁자의 승인을 얻은 직인을 사용

라. 명 칭 :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환경사업소

마. 위탁관리기간

- 위·수탁기간은 협약 체결후 인계·인수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연장 가능
- 다만, 관리공단등이 설립된 경우 운영관리권 이관
- 수탁기간 연장시 협약기간 만료 3개월전 협약연장여부 서면통보후 협의에 의하여 협약내용을 변경

바. 위탁관리비

- 2001년 위탁관리비는 ○○○원으로 한다.
- 2001년도 예산 370,000,000원(불입 비목참조) : 계약체결시 변경
- 위탁관리비는 1년단위로 산정하여 계약하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

- 원가계산 누락된 비목은 협약기간내 추가조정 불가, 협약기간 연장, 추가공사, 시설용량변경등 운영여건 변동으로 위탁비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예산범위내에서 협약 변경 가능
- 수선유지비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내구성 공구등의 개·보수비 포함 수탁시설 하자보수기간중에는 하자보수의 한계규명 실비정산
- 인건비 제외한 전력비, 약품투입비, 유지보수비등은 실제 납입금액으로 정산

사. 자산투자비의 부담

- 사무기기, 공구, 차량구입등 모든 비용은 수탁자 부담하되 다음비용은 위탁자 부담
 - 위탁자산의 가치 증진 및 내용연수 증진하는 시설·개·보수공사
 - 기자재 등 유동자산의 확보
 - 천재지변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 수탁자는 매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사업계획서등을 제출

아. 기계장치 및 시설물의 수선

기계장치 및 시설물등은 수탁자가 책임지고 보수 및 유지관리

자. 협약이행보증금

위탁관리비의 100분의 10이상의 현금 또는 현금에 갈음하는 이행보증증권 납부

차. 재위탁의 금지

수탁업무의 전반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금지

카. 법령등의 준수

수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처리시설의운영관리관계법령 및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위탁및영에관한조례와 동시행규칙,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위탁업무처리지침 준수

타. 업무의 적정관리

- 수탁자는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 수탁자는 처리시설을 24시간 연속 가동, 불가피한 경우 사전 협의
- 수탁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 자격 소자자 배치

파. 수질관리

- 방류수 수질을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환경영향평가협회의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처리
-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할 때 개선대책 강구
- 방류수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수탁자의 책임

하. 시설설비등의 사용

- 위탁자는 위탁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시설, 설비, 비품등을 수탁자에게 무상 제공. 단,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협약이 해제되었을 때는 해당시설, 설비, 비품 등을 즉시 원상복구 인도
- 무상 제공할 재산의 범위는 위탁자가 별도로 정함
- 위탁자가 무상제공기로 정한 재산 이외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품, 자재, 기구, 차량 등은 수탁자 부담 확보

거. 사고보고

수탁자는 위탁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사고 발생한 경우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름. 수탁재산 변동사항도 같음

너. 조사등

- 위탁자는 위탁업무의 성실 이행여부와 재산관리 실태 등을 매반기마다 정기적 평가
- 위탁자는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수시 조사, 보고 필요한 지시 가능
- 수탁자는 조사등과 관련한 위탁자 요구의 기록 및 보고서 제출

더. 실적보고 및 확인

- 수탁자는 매월 수탁업무 처리성과 보고 및 확인

러. 위탁관리비의 청구 및 지급

- 위탁관리비는 월 단위로 수탁업무처리성과 보고시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처리성과 확인후 매익월 15일까지 지급
- 매회계연도 경과후 2월말까지 수탁업무결산서 작성제출
- 수탁자는 사업연도마다 수탁업무 예산안을 편성 위탁자의 승인
- 예산안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예산안을 매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제출

머. 기밀유지

수탁업무 처리과정에서 얻은 기밀을 제3자에게 누설 금지

버. 민·형사상의 책임

수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짐

서. 협약의 해제

- 다음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자는 협약해제 가능
 -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인수하지 않을 때
 - 위탁자가제시한 관계법령등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시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
- 위의 규정외에 필요한 경우에도 협약 해제 가능.
단, 협약 해제하려는 날로부터 6개월전까지 통지
- 수탁자는 위탁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협약 해제 가능

어. 손해배상

- 수탁자의 귀책사유시 협약 해제될 때 3개월분의 위탁관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배상금 지불
- 위탁자의 협약 해제로 수탁자가 손해가 있을 경우 손해 배상
-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수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탁자에게 손해를 입힌때 손해 배상
- 손해에 대한 배상금액은 쌍방간 협의 결정
- 위탁업무 처리와 관련 제3자(하류지역주민등)에게 손해를 입힌때 수탁자 부담으로 배상 다만, 손해의 발생이 위탁자의 책임인 경우 위탁자가 부담

저. 기타사항

- 공공의 목적상 가압장등 용수시설등 관련부서 이관전까지 수탁자 부담으로 운영관리
- 수탁자는 신규 또는 결원 보충시 지역의 고용기회 제공
- 수탁자는 시설물 주변 주민의 생활불편 최소화 및 부대시설 개방 등 서비스 개선 노력

처. 관할법원

관할법원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함

커. 협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

협약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3. 협약서안 및 위탁업무처리지침 : 별첨

4. 관계법규 발췌 : 별첨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위·수탁협약서안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 제7조 및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위탁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을"이라 한다)은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업무를 각각 위·수탁하기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협약목적) 이 협약은 처리시설을 효율적·경제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갑"이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수탁 운영관리대상 재산의 명세) 운영관리 위탁대상 재산의 명세는 "갑"과 "을"이 협의·작성하는 인계·인수서에서 별도(별표1)로 정하는 바와 같다.

제3조 (위탁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이 협약에 의한 위·수탁업무의 세부적인 내용 및 처리방법등에 대하여는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위탁업무처리지침』으로 정한다.

제4조 (수탁사무의 처리) 이 협약에 의하여 "을"에게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는 "을"의 명의로 시행하되, "갑"의 승인을 얻은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 (명칭) 본 처리시설의 명칭은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환경사업소"라 칭한다.

제6조 (위탁기간 및 협약변경) ① 위·수탁 운영 개시일은 ○○○○년 ○ 월 ○ 일로 한다.

② 위·수탁 기간은 협약체결후 인계·인수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운영관리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관리공단등이 설립된 경우 관리공단등에 운영관리 업무를 이관한다.

③위·수탁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협약기간 만료 3개월전 협약연장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갑"과 "을"이 협의에 의하여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단,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위탁관리비) ①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에 따른 비용(이하 "위탁관리비"라 한다)은 연간 ○○○○○○○○○○○원으로 하며 비목별 내역은 별도(별표2)로 정한다

②위탁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모든비용은 "을"이 부담하며 위탁관리비는 1년단위로 산정하여 계약하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갑"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③위탁후 원가계산에서 누락된 비목이 발생할 경우 협약기간내에는 추가로 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협약기간의 연장, 추가공사, 시설용량변경 등 당초 위탁비용 산정시와 운영여건 변동으로 위탁비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④수선유지비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내구성 공구등의 개·보수비가 포함된 것으로서 수탁시설의 하자보수기간중에는 하자보수의 한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해당 수선유지비로 "갑"이 산정한 원가계산액 범위내에서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⑤인건비를 제외한 전력비 및 약품투입비, 유지보수비등은 "을"이 부담하되 연말에 실제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제8조 (자산투자비의 부담) ①위·수탁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사무기기, 공구, 차량구입등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하되 다음 각호의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1. 위탁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진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보수 공사
2. 기자재 등 유동자산의 확보
3. 천재지변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②"을"은 제1항의 내용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갑"에게 사업계획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기계장치 및 시설물의 수선) 기계장치 및 시설물등은 "을"이 책임지고 보수 및 유지관리하여 내구연한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내구연한이 경과하더라도 사용 가능하면 계속사용토록 하고,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 할 때에는 "갑"에게 보고하여 교체여부를 확인후 교체할 수 있다.

제10조 (협약이행보증금)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을"은 협약이행보증금으로 위탁관리비의 100분의 10이상의 현금 또는 현금에 갈음하는 이행보증증권을 "갑"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재위탁의 금지) "을"은 수탁업무의 전반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제12조 (법령등의 준수) "을"은 수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처리시설의 운영관리관련법령,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위탁및운영에관한조례 및 동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갑"이 정하는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위탁업무처리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업무의 적정관리) ①"을"은 어떠한 경우에도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갑"과 협조하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②"을"은 처리시설을 24시간 연속 가동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가동을 일시 또는 장시간 중지할 경우에는 "갑"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을"은 폐수처리시설운영관리관련법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인력을 임용·배치하여야 한다.

제14조 (수질관리) ①"을"은 방류수 수질을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환경영향평가협약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처리되도록 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을"은 처리수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할 때는 그 사유 및 원인을 규명하여 지체없이 "갑"에게 통보하고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을"은 방류수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5조 (시설설비등의 사용) ①"갑"은 위탁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시설, 설비, 비품 등을 "을"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단,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또는 협약이 해제되었을 때는 해당시설, 설비, 비품 등을 즉시 원상복구하여 "갑"에게 인도한다.

②무상 제공할 재산의 범위는 "갑"이 별도로 정한다.

③"갑"이 무상제공키로 정한 재산 이외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품, 자재, 기구, 차량 등은 "을"의 부담으로 확보한다.

제16조 (사고보고) "을"은 위탁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보고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수탁재산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 (조사등) ①"갑"은 위탁업무의 성실 이행여부와 재산관리 실태 등을 매반기마다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②"갑"은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수시로 조사하거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③"을"은 조사 등에 관련하여 "갑"이 요구한 기록 및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실적보고 및 확인) "을"은 매월 수탁업무의 처리성과를 "갑"이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갑"에게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위탁관리비의 청구 및 지급) ①위탁관리비는 월 단위로 수탁업무 처리성과 보고시 "을"의 청구에 의하여 "갑"이 처리성과 확인후 매익월 15일까지 지급한다.

②"을"은 매회계연도 경과후 2월말까지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을"은 사업연도마다 수탁업무에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을"은 예산안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매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기밀유지) "을"은 위탁업무 처리과정에서 얻은 기밀을 "갑"의 허락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 (민·형사상의 책임) "을"은 위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을"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2조 (협약의 해제) ①"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갑"은 이 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을"이 위탁업무를 인수하지 않을 때
2. "갑"이 제시한 관계법령등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시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

②"갑"은 제1항 각호의 규정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이 협약을 해제하려는 날로부터 6개월전까지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을"은 "갑"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3조 (손해배상) ①"을"은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협약이 해제될 때에는 3개월분의 위탁관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배상금을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②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제로 "을"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갑"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을"은 "을"의 귀책사유로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액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⑤위탁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제3자(하류지역주민등)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을"의 부담으로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의 발생이 "갑"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에는 "갑"이 부담한다.

- 제24조 (기타사항) ① "을"은 공공의 목적상 가압장등 용수시설에 대하여도 관련부서 이관전까지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 ② "을"은 운영관리를 위한 신규 또는 결원 보충시 지역의 고용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을"은 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시설물 주변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부대시설을 개방하는등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 (관할법원) 이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26조 (협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해 본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로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 ○ ○ 년 ○ 월 ○ 일

"갑" 충청북도지사 ○ ○ ○

"을" (주) ○ ○ ○ ○ 대표이사 ○ ○ ○

<별첨>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관리업무처리지침

[별표1]

위탁재산의명세

□ 시설개요

1. 시설명 :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2. 시설용량 : 63,000톤/일(폐수 40,000, 오수 23,000)
※ 금회 위탁처리용량 11,500톤/일
3. 부지면적 : 78,748㎡(23,821평)
4. 처리방식
 - 수 처리 : 중력침전, 생물학적영양염류제거, 3차고도처리
 - 슬러지처리 : 원심탈수, 매립 또는 소각
5. 기타 부대시설
차집(폐수)관거, 중계펌프장, 방류관로, 관리본동의 9종, 기계 및 전기

□ 금회위탁시설

○ 토목시설물(11,500톤/일)

구 분		규 격	수량	비 고
①침 사 지		W1.5m×L10.0m×H0.6m	1지	협잡물과 모래제거
②유 량 조 정 조		W12.7m×L30.7m×H5m W26.2m×L6.0m×H5m	1지 1지	유입수 유량의 시간적 변동조정
③1 차 침 전 지		W8.0m×L25m×H5m	2지	슬러지침전 및 제거
④ 생물 반응조	협 기 조	W8.0m×L16.0m×H4.4m	2지	유입폐수의 유기물이 생물반응조에서 활동하는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 협착 제거되는 공정
	무산소조 I	W8.0m×L16.5m×H4.4m	1지	
	준호기조 I	W7.0m×L16.5m×H4.3m	1지	
	호 기 조	W16.5m×L23m×H4.2m	1지	
	준호기조 II	W8.0m×L16m×H4.1m	1지	
	무산소조 II	W8.0m×L16m×H4m	1지	
⑤2 차 침 전 지		W8.0m×L30.0m×H3.9m	2지	슬러지 침전 및 제거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⑥ 혼 화 지		W3.0m×L3.0m×H3.1m	1지	약품투입 응결 효과증대
⑦ 플록형성지 및 응집침전지	플록형성지	W3.8m×L13.7m×H3.3m	1지	침전이 양호한 응결물형성
	응집침전지	W8.0m×L50.0m×H4.2m	2지	응결물 침전 및 제거
⑧ 사 여 과 지		W7.0m×L11.5m×H3.8m	2지	저농도의 부유물질 제거
⑨ 여 과 수 조		W7.0m×L13.5m×H3.8m W7.0m×L9.8m×H3.8m	1지 1지	
⑩ 소 독 조		W1.40m×L5.7m×H0.8m	1지	방류전 멸균
⑪ 약 품 저 장 조		W2.90m×L6.9m×H2.6m	1지	약품저장
⑫ 유 량 계 실		W4.4m×L9.6m×H1.2m	1지	배출수 유량측정
⑬ 방 류 관 로		L=1.74km, D=900mm, 맨홀등	1식	미호천 방류

○ 건축시설물

구 분	층 수	구 조	수 량	건축면적	연면적	용 도	비 고
계			10 동	4,806.637 m ²	5,705.092 m ²		
① 관 리 본 동	지하1층 지상1층	R.C조	1동	459.530	1,124.660	관리	
② 변 전 실 동	지상1층	R.C조	1동	240.000	240.000	전기	
③ 혼 화 지 동	지상2층	R.C조	1동	385.560	618.885	기계	
④ 송 풍 기 동	지상1층	R.C조	1동	382.880	382.880	기계	
⑤ 유 량 조정 조 동	지상1층	R.C조	1동	189.280	189.280	기계	
⑥ 여 과 지 동	지상1층	R.C조	1동	2,074.800	2,074.800	기계	
⑦ 침 사 지 동	지상1층	R.C조	1동	856.617	856.617	기계	
⑧ 응 집 침 전 지 (호이스트실)	지상1층	R.C조	1동	29.700	29.700	기계	
⑨ 응 집 침 전 지 (계 단 실)	지상1층	R.C조	1동	10.710	10.710	출입	
⑩ 2차 침 전 지 (계 단 실)	지상1층	R.C조	1동	48.600	48.600	기계	
⑪ 활성탄흡착실	지상1층	R.C조	1동	128.960	128.960	기계	

○ 기계설비

구 분	품 명	종류	수 량	비 고
계		97종	144	
①침사지설비	침사지유입차단게이트등	19종	21	
②유량조정조 및 유입펌프설비	유량조정조유입게이트등	7종	11	
③1차침전지	바닥배수펌프등	1종	2	
④생물반응조설비	준호기조산기관등	6종	9	
⑤2차침전지설비	유입게이트등	10종	19	
⑥혼화지 및 응집침전지설비	혼화지유입밸브등	14종	21	
⑦약품투입설비	PHCS조절탱크등	9종	11	
⑧여과지설비	역세펌프등	14종	25	
⑨활성탄흡착 및 UV소독설비	중간벽게이트등	3종	3	
⑩탈수설비	원심탈수기등	14종	22	
⑪탈취설비	-	-	-	

○ 전기설비

구 분	품 명	수 량	비 고
계		11시설	
① 변 전 실	수배전반(ALTS외)	30 set	각동 모터기동반 전원공급
② 각동전기실	모터기동반(MCC-1외)	11 set	각부하단전원공급
③ 송풍기동	송풍기기동반(HV-SM-1외)	10 set	송풍기전원공급
④ 각동전기실	현장제어반(LOP)	33 set	감시및제어설비
⑤ 각동전기실	계측기기(수위계외)	40 set	수위농도및유량측정
⑥ 실험실	실험실설비	37 set	실험실장비
⑦ 전 현 장	전력간선(가교PE케이블)	11,000 m	모터기동반전원 공급용케이블
⑧ 전 현 장	케이블트레이(W600×H150)	2,800 m	케이블플링용 레이스웨이
⑨ 전 현 장	배관(강제전선관 22mm외)	3,500 m	케이블플링용 레이스웨이
⑩ 전 현 장	배선(가교PE케이블외)	23,000 m	동력및제어용케이블
⑪ 전 현 장	건축전기전등(매입개방형외)	215 ea	등기구

※ 단, 전기·계장기계 설비는 현장 부하 시운전후 검측확인을 거쳐
인계·인수하며 인계·인수 수량 변경 가능

[별표2]

위탁운영비 비목별 내역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거	비 고
계	원 370,000,000	30,396천 원/월 × 12월 = 364,752 ≒ 370,000천 원	
인 건 비	142,200,000	6인(소장, 기술직 2, 기능직 3)	
전 력 비	54,900,000	기본요금 1,845천 원/375kW 월, 사용요금 2,730천 원/57,600kW/월	
연 료 비	16,620,000	2,500 ℓ /월(경유), 554원/ℓ 당	
약 품 비	17,388,000	응결제(Alum : 하수, PHCS : 폐수) 조정제(CH ₃ OH : 메탄올, NaOH : 수산화나트륨)	
유지보수비	90,000,000	7,500천 원/월	
기 타	49,092,000	슬러지처리비 6,176천 원 소모품비 7,116, 실험유지비 35,800	

※ 전력비, 약품비, 연료비, 수선비, 슬러지처리비, 수도비, 보험 및 연금, 복리후생비, 소모품 및 통신비, 기타제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등이 포함된 금액임

단, 인건비를 제외한 전력비, 약품비, 유지보수비등은 정산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위탁업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본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처리시설위탁업무처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업무를 민간위탁 함에 있어 위탁대상 업무의 내용 및 그 처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규정등 준수) 수탁자는 수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 관리함은 물론 이 지침 및 위·수탁협약서에 따라 위탁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위탁대상시설의 표시) 위탁대상시설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1. 시 설 명 :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2. 시설용량 : 63,000톤/일(폐수 40,000, 오수 23,000)
3. 부지면적 : 78,748㎡(23,821평)
4. 처리방식
 - 수 처 리 : 중력침전, 생물학적영양염류제거, 3차고도처리
 - 슬러지처리 : 원심탈수, 매립 또는 소각
5. 기타 부대시설
 - 차집(폐수)관거, 중계펌프장, 방류관로, 기타 관리동의 9종

제4조 (위탁대상업무의 내용) 위탁대상업무의 주요내용은 각호와 같다.

1.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업무
 - 가. 오·폐수량의 계측
 - 나. 오·폐수의 처리
 - 다. 슬러지 처리
 - 라. 시설의 순시, 점검, 정상상태 유지, 운전조작
 - 마. 시설 및 각종 기기의 청소작업
 - 바. 보호시설 및 각종 기기 등의 정상 유지, 점검, 고장수리
 - 사. 소방시설의 정상 유지·점검

- 아. 폐수종말처리구역내 차집(폐수)관거 준설 및 유지관리
- 자. 오·폐수 중계펌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
- 차. 방류관로 준설 및 유지관리
- 카. 수목관리 및 조경시설 관리
- 2. 냉·난방시설의 관리업무
 - 가. 관리동등 난방용 보일러의 조작, 점검, 정상 유지관리, 기록
 - 나. 유류탱크의 점검, 정상 유지관리 및 연료접수, 기록
 - 다. 시설내·외 난방기구 및 동결방지장치의 정상 유지관리, 점검
 - 라. 처리시설 및 각종 기기의 유지관리, 기록
- 3. 시설내·외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 관리업무
 - 가. 전기설비
 -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 시설의 안전관리업무 수행, 조작, 정상 유지관리, 점검 및 기록
 - 나. 급·배수설비
 - 급수장치, 위생설비의 조작, 정상 유지관리 및 점검
- 4. 폐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및 시험
 - 가. 검사의 실시
 - 통상 업무시에는 매일 정시에 측정한다.
 - 나. 시료채취 장소 및 측정개소(1일 측정)
 - 폐수유입부, 유량조정조, 최초침전지, 생물반응조, 최종침전지, 응집침전지, 사여과지, 하천방류구, 반송오니, 탈수케이크 등
 - 다. 시험항목
 - 수질환경보전법령등 관련법규, 유지관리지침에 의한 1일, 주간, 월간, 분기등 측정항목
- 5. 처리시설 내·외의 환경정비
 - 가. 관리동등 건축시설물 실내청소, 화장실 청소, 부지내의 청소, 잡초제거, 제설등
 - 나. 정기적(연 1회이상)으로 하는 작업으로는 시설 진입도로 청소, 관리동 실내의 왁스작업

- 6.약품, 실험실 운영에 필요한 초자기구류·시약류등 관리
7.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보관관리
8.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9. 수질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0. 폐수종말처리시설에 관한 일반사무처리
11. 폐수배출업체의 폐수처리시설유입처리승인, 배수설비설치승인,
배수설비설치검사, 배수설비사용개시등에 관한 업무
12.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징수, 관리등에 관한 업무
13. 기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위탁자에 의해 지시를 받은 시설물의 설치, 기계장치등, 이 경우 비용
은 위탁자와 협의 한다.

제5조 (종업원의 임용등) ①수탁자는 협약체결 즉시 시설의 운영관리 능력이 있는 성실한 종업원을 임용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위탁자의 추천을 받아 시설운영관리 임직원으로 임용할 인원수는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현장대리인) ①수탁자는 협약체결 즉시 현장대리인을 선임한 후 위탁자에게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현장대리인은 위·수탁협약서 및 이 지침의 내용을 숙지하고 현장 책임자로서 항상 종업원을 지도·감독한다.

제7조 (작업복장) 작업자는 작업에 편리하고 안전수칙에 맞는 복장 및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8조 (긴급시의 조치) ①수탁자는 항상 사고방지에 노력하고 운영상의 이상 또는 사고등 긴급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인원을 배치하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호우, 폭설, 낙뢰등 자연재해로 인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조하여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9조 (응급처치 및 사고보고) ①수탁자는 수탁업무 수행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 및 상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응급처치를 취함은 물론 사고의 발생원인, 경과, 피해의 내용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위탁자 및 유관기관에 연락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서 직접 대처할 경우에는 2차 재해를 방지하는 등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종업원의 업무시간 및 배치) 시설은 24시간 운전하여야 하므로 수탁자는 수탁업무 처리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배치함은 물론 시설관리를 위하여 24시간 상주토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업무관리 및 안전교육) ①수탁자는 본 업무가 공공적으로 중대함을 명심하여 노무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업무수행상 위험이 따르는 작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종업원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안전 및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사무실등의 사용) ①위탁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무실등은 협약기간중 무상으로 사용하되 사용상 파손·오손등으로 인한 원상 복구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사무실 등의 사용에 따른 광열비, 수도료, 인계·인수받은 물품외의 물품구입비, 수선료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13조 (자재 및 경비의 부담구분)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재 및 경비의 부담구분은 위·수탁협약서 의하며 수탁자는 무상대여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공구·사무기기등의 사용) ①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인계받은 기구, 공구, 사무기기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되, 보관상태를 수시로 조사하여 파손, 도난, 분실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내구연한이 지난 불용품등 재산을 폐기처분할 경우는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고 그 매각대금은 위탁자에게 불입한다.

제15조 (제출서류) 수탁자는 수탁협약 체결후 즉시 다음 서류를 위탁자에게 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제2호 내지 제4호에 대한 변경이 있을 때에도 같다.

1. 업무착수신고서
2. 사업총괄책임자 및 분야별책임자 선임신고서
3. 작업상의 운영규칙(유지관리지침 포함)
4. 비상시의 역할분담 및 연락도

제16조 (일보 및 업무예정표) ①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일보 및 업무예정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업무예정표(연간, 월간)
2. 운전일보
3. 보일러 운전일보
4. 야간 순회일보
5.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 및 장부

②매월 위탁업무 처리성과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운전일보
2. 수질 유지관리 월보
3. 수질검사결과 및 유지관리지표
4. 기타 위탁자가 요구하는 서류

제17조 (업무처리방법) ①수탁자는 시설이 공공용 수역의 보전과 주민 환경위생에 지대한 영향이 있음을 명심하여 수질시험 결과가 처리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수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종 기기의 용도, 기능을 충분히 이해하여 운전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운전조작을 하여야 한다. 특히, 장기간에 휴일이 계속될 때에는 그 운전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각종 기기의 운전·조작은 제원 및 기기 취급설명서, 관계도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④고장등으로 오·폐수처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기기의 운전을 정지하거나 재개할 때에는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점검정비) 수탁자는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각종기기의 수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상 및 정기적인 순시를 하고 이상음, 온도, 진동, 손상, 누수, 녹, 작동상황, 급유상황, 기름누출, 지시압의 확인등을 아래의 방법에 의해 점검해야 한다.

1. 일상점검은 수시로 행하되, 예방보전을 목적으로 외관 및 오감에 의한 점검을 주로 하며, 이상 개소의 조기발견 및 그 상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치하여야 하며 그 경과를 기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정기점검은 1주·1개월·3개월·6개월·1년 단위로 1회이상 실시하되,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고 점검계획의 승인을 받아 종합적으로 수행한 후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측정기의 교정, 조정, 급유, 소모품의 교환, 보충, 청소등 각기기는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수시 정비하고 필요에 따라 분해 정비 등을 하여야 한다.

제19조 (수리 및 개조) ①수탁자는 각종 점검·정비과정에서 불량개소 또는 사고·고장이 발생한 파손개소를 발견한 때에는 현장에서 수리가 가능한 것은 그 내용을 위탁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응급수리를 행한 후 위탁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수탁자는 중요시설 및 설비 등의 개조로 위탁재산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 (유자격자에 의한 작업) 수탁자는 전기공작물, 위험물, 보일러, 약품 등의 취급시에는 관계법규에 따라야 하며 보호구의 사용등 안전대책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노동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여 구호활동, 통보, 비상연락 등의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 (경비 및 도난) 수탁자는 시설, 설비, 기기 등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장소를 충분히 감시하여야 하며, 도난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히 이를 위탁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2조 (예비조사 및 시험운영) ①수탁자는 협약후 인계·인수전까지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일제조사, 폐수처리 전과정의 시험운영 등을 통하여 인수후 정상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전 종업원에게 수탁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 숙련화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③인계·인수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 또는 해제시에 시설, 기구, 기자재 및 물품 등의 원상복구와 반환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인계·인수서상의 재산은 물론 시설물의 전 배경을 영상 촬영한 기록테이프를 상호 보관한다.

제23조 (기타) ①위탁자는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상 꼭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가로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지시되지 않은 사항에 있어서도 운전조작상 당연히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양식있는 판단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제24조 (다른 의견의 해석)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발생한 경우와 해석 또는 사무수행에 있어서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關聯法規 (部分拔萃)

□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의 위임등)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생략

□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 (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정·관리업무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한 때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

○ 제4조 (위탁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정·관리업무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 행정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③ 생략

○ 제7조 (협약체결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위·수탁 사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사무위탁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시행규칙

○ 제3조 (위탁의 동의요청)

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실·과·소장이 미리 도의회에 동의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위탁및운영에관한조례

○ 제4조(처리시설의 위탁)

①관리권자는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관리공단등” 이라 한다)에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관리공단등이 설립되기 전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관리권자는 관리공단등에 위임·위탁할 경우 이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